| 의안번호 | 제 196 호 |
|-------|------------|
| 의 결 | 2023년 2월 일 |
| 연 월 일 | (제 회) |

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발 의 자 | 박지헌 의원 등 7인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발의연월일 | 2023년 2월 28일 |

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지헌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6 발의연월일 : 2023년 2월 28일

발 의 자 : 박지헌, 이동우, 김종필,

김호경, 박진희, 변종오,

유재목

1. 제안이유

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개정과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기존 '녹색제품' 개념의 포괄적 구체화와 이와 관련된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내용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의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2조)
- 나. 녹색제품구매촉진 협의회 및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4조, 안 제6조)
- 다. 판단기준의 설정·관리 및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 개정 (안 제7조, 안 제8조)
- 라.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11조)
- 마. 제15조 기관 평가 및 제17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
- 3. 조례안 : 붙임
-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 의 : 충청북도 환경삼림국 환경정책과

라. 조례안 예고 : 예고대상(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녹색제품"이란 「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하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.
- 2. "구매이행계획"이란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녹색제품 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.
- 3. "구매실적"이란 도지사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.
- 4. "관내기업"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충청북도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.
- 5. "자발적 협약"이란 도지사, 공공기관, 사업자,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 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운영한다"를 "운영할 수 있다"로 한다. 제6조제1항 중 "다음 연도"를 "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"로, "수립하고,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"를 "수립하고,"로, "홈페이지와 공보 등"을 "홈페이지"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협의회에서 정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"를 "다음의 기준에 따른다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

같은 항 제2호 중 "순환골재"를 "순환골재 재활용제품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"을 "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"로 한다.

1. 「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

제8조제2항 중 "충청북도홈페이지와 공보 등에 의한다"를 "충청북도 홈 페이지에 한다"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실시하여야 한다"를 "실시할 수 있다"로 한다.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혀 했

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"녹색제품"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 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.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 품으로서 「녹색제품 구매 촉 진에 관한 법률 | (이하 "법"이 라 한다) 제2조에서 정한 상품 을 말한다.

- 2."구매이행계획"이란 충청북도 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.
- 3."구매실적"이란 도지사가 이 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 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.
- 4. "관내기업"이란 본사 또는 생 산시설이 충청북도내에 소재 한 기업을 말한다.
- 5."자발적 협약"이란 도지사, 공 공기관, 사업자, 민간단체 등 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 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

개 정 아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"녹색제품"이란 「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 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.

- 2. "구매이행계획"이란 충청북 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 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 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.
- 3. "구매실적"이란 도지사가 이 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 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.
- 4. "관내기업"이란 본사 또는 생 산시설이 충청북도내에 소재 한 기업을 말한다.
- 5. "자발적 협약"이란 도지사. 공공기관, 사업자,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 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 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.

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(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)
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다음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녹색제품구매 촉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

1. ~ 7. (생략)

다)를 운영한다.

② (생략)

제6조(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) ① 도지사는 환경부장관 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<u>다음 연도</u>의 녹색제품 구 매이행계획을 <u>수립하고, 회계연</u> 도 시작 전까지 이를 충청북도 홈페이지와 공보 등에 공표하여 야 한다.

②·③ (생 략)

제7조(판단기준의 설정·관리) ①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(이하 '판단기준'이라 한다)의 설정은 협의회에서 정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.

| 제43 | 조(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)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) |
| | |
| | |
| | |
| | <u>운영할 수 있다</u> . |
| 1. | ~ 7. (현행과 같음) |
| 2 |) (현행과 같음) |
| 제62 | 조(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|
| 수 | ·립) ① |
| | |
| | <u>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</u> |
| <u>월</u> |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 |
| | <u>수립하고,</u> |
| <u>홈</u> | -페이지 |
| | |
| 2 |)·③ (현행과 같음) |
| 제72 | 조(판단기준의 설정·관리) ① |
| | |
| | |
| | |
| <u>다</u> | 음의 기준에 따른다. |
| | |

- 1. 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 한 특별법」에서 정한 저공해 자동차
- 2.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| 에 따른 순환골재 3. (생략)
- 4.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에 따 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
- 5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- (생 략)
 -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는 충청북도홈페이지와 공 보 등에 의한다.
 - ③ (생략)
- 제11조(교육) ① 도지사는 녹색제 제11조(교육) ① -----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 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(생 략)
- 제15조(기관 평가)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 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

- 1. 「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| 제2조제2 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
 - ---- 순환골재 재활용제품
 - 3. (현행과 같음)
 - 4.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 제3 장제1절에 따른 에너지사용기 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
 - 5. (현행과 같음)
 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 제8조(녹색제품의 구매실적) ① 제8조(녹색제품의 구매실적) ① (현행과 같음)
 - (2) -----
 - ----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한다.
 - ③ (현행과 같음)
 - - -----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(현행과 같음)
 - <삭 제>

②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실적 이 우수한 시장 • 군수에 대하여 는 「수도법」 제75조, 「하수 도법」 제63조 및 「폐기물관리 법」 제56조에 따른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 게 건의할 수 있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 <삭 제>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.

관계법령

□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녹색제품"이란 「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.
- 2. "공공기관"이라 함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,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
- 제7조(녹색제품의 구매지침)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1. 4. 5.〉
- 제8조(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)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(이하 "이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공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1. 4. 5., 2012. 2. 1.〉

② (생략)

제17조(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)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, 사업자,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

- 제66조(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·소비 문화의 확산) ① ~ ③ (생 략)
 - ④ 정부는 에너지·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(이하 "녹색제품"이라 한다)의 사용·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·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